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17.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 9. 1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종근 교육국장)

1. 제안이유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대회의 종류(안 제2조)

-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 (3)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나. 체육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하고, 수여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5조)

- (1)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는 표창에 대한 부상을 할 수 있는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 (2) 표창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 (3)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표창대상자 추천(안 제6조)

- (1)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추천함.
- (2)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함.

마.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음.(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06.12.20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시도 교육감 선거 시 학교운영위원의 간접 선출에서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향후 교육감 선출시 공직선거법을 준용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그간 시도 교육감이 지급하던 각종 체육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품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 이 제도를 보완하고자 공직선거법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학생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와 선수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

-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등)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 나목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3.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제3조(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

②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③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

④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9조에 의거 추천한다.

제7조(공적심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표창대장 등) 표창장·상장·감사장 서식은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취

□ **국민체육진흥법**(전면개정 2007.4.11)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4.27]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9조(표창추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추천은 본청의 각국·담당관 및 각 과장과(교육장 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 과장 포함)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의뢰기관장 포함)이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 및 표창 추천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

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교육청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
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총무과 업무담
당사무관이 된다.

2. 하급교육청에는 “충청북도 ○ ○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